

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정관

제정 2009. 8. 14
개정 2014. 10. 14 정관 제 2호
개정 2015. 03. 25 정관 제 3호
개정 2015. 08. 21 정관 제 4호
개정 2017. 05. 30 정관 제 5호
개정 2020. 2. 5 정관 제 6호
개정 2023. 1. 5 정관 제 7호
개정 2024. 7. 10 정관 제 8호
개정 2025. 3. 21 정관 제 9호
개정 2026. 3. 3 정관 제 1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전 · 활동 · 상담 · 보호 · 복지 등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08. 21, 2023. 01. 05, 2025. 03. 21>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5. 08. 21, 2023. 01. 05, 2025. 03. 21>

제3조(소재지)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복지행정타운내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 둔다. <개정 2014. 10. 14>

제4조(사업)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
2. 청소년 보호 · 복지에 관한 사업
3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· 관리
<개정 2014. 10. 14> <개정 2020. 2. 5>
4.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<개정 2014. 10. 14>
5.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<신설 2015. 08. 21>

6. 그 밖에 청소년육성·보호·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 <신설 2014. 10. 14> <개정 2015. 08. 21>

제5조(수익사업)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인은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01. 05>

제2장 임원

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대표이사 1인 <개정 2017. 05. 30>
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 <개정 2017. 05. 30>
4. 감사 2인

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7. 05. 30>

제7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3. 25>

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, 이사회의 선임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. <개정 2025. 3. 21>

1. <삭제 2015. 3. 25>
2.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
3. 시 예산업무 담당국장
4.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<개정 2014. 10. 14>

④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관련 교육 등을 전공한 교수,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3. 25>

⑤ 감사 2인중 1인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하고 1인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 3. 25>

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⑦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3. 25>

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20. 2. 5>

1.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
3.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

제8조(임원의 해임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
4.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②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제9조(임원의 선임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5. 3. 25>

제11조(대표이사)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둔다. <개정 2014. 10. 14> <개정 2017. 05. 30>

② <삭제 2015. 3. 25>

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위·감독한다. <신설 2023. 01. 05> <개정 2026. 03. 03>
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28조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평가결과, 경영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7. 05. 30> <개정 2020. 02. 05, 2023. 01. 05>

I. 조례와 정관

② <삭제 2020. 2. 5>

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5> <개정 2020. 2. 5>

④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임기는 「용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3 및 관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<신설 2023. 01. 05>
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6. 03. 03>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목적사업을 전담하고,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17. 05. 30> <개정 2024. 07. 10> <개정 2026. 03. 03>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1부시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5. 3. 25> <개정 2020. 2. 5>

③ <삭제 2015. 3. 25>

제3장 이사회

제15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6조(이사회 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한다.

〈개정 2014. 10. 14〉

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,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〈신설 2014. 10. 14〉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
3.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

③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 10. 14〉

④ 이사회 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 10. 14〉

제17조 〈삭제 2014. 10. 14〉

제18조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9조(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

② 이사회 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(이사회 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15. 3. 25〉
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법인의 각종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

제21조(이사회결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2조(이사회회의의록)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과 출석이사 1인 및 감사 1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05. 30>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23조(재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시가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② 법인은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5조(운영재원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기본재산의 과실
2. 시 또는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사업수익금
4. 기타수익금

제25조2(기부금액의 공개) 재단은 매년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
<본조신설 2024. 7. 10>

제26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7조(예산편성) 법인의 세입·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 05. 30, 개정 2023. 01. 05>

제28조(결산서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4. 10. 14, 2023. 01. 05>

1. 결산서
2. 시장이 지정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

② <개정 2014. 10. 14> <삭제 2023. 01. 05>

제29조(세계잉여금)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.

제30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05. 30>

제31조(재산대여 금지)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법인의 임직원
2. 법인의 임직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3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2조(회계감사)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.

②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장 위원회

제33조(위원회) ① 이사장은 법인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·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
I. 조례와 정관

② 각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위원회는 시의회의원과 청소년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로 구성하며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07. 10>

④ <삭제 2024. 07. 10>

제3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각 위원회는 법인의 사업계획수립과 시행등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 및 법인운영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한다.

② 제1항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업무에 반영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요청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1인과 간사가 기명·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6조 <삭제 2014. 10. 14>

제6장 사무국

제37조(사무국)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7. 05. 30>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8조(직원의 임면) 법인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9조(직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 2. 5>
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로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 하는자 <개정 2023. 01. 05>
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법인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

제40조(직원의 복무) 법인의 직원은 법인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.

제41조(직원의 겸직제한)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17. 05. 30>

제42조(직원의 신분보장) 법인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제7장 보칙

제43조(법인해산)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.

제44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고,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의 변경은 시장에게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2. 5, 2023. 01. 05>

제45조(보고·검사 등)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

I. 조례와 정관

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 및 시의회가 보고·감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〈삭제 2014. 10. 14〉

제46조(규정제정)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부칙 〈2014. 10. 14 정관 제2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5. 3. 15 정관 제3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5. 8. 21 정관 제4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7. 5. 30 정관 제5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. 2. 5 정관 제6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4. 7. 10 정관 제8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6. 3. 3 정관 제10호〉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기본재산 목록

구 분	금 액	비 고
출연금(현금)	50,000,000원	

[별표 2]

설립발기인 명단

성 명	소속 · 직위	비 고
서정석	용 인 시 장	총 12명
박상무	(前) 공무원	
최운실	아주대 교육대학원장	
김병석	단국대 교수	
김지자	(前) 교수	
김해수	용인시 청소년자원봉사회 회장	
박남숙	용인시의회 의원	
이윤규	"	
이종욱	용인교육청 학무국장	
김영명	용인시 주민생활지원국장	
김도년	용인시 자치행정국장	
조현덕	공인회계사	